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 민 지 원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408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예치금 42억 8,900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적립할 예정으로,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으로 집행하고자 '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35,133	40,922	5,789
전 입 금	27,821	27,821	-
예치금회수	5,144	9,433	4,289
예탁금회수	2,000	3,500	1,500
이 자 수 입	168	168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35,133	40,922	5,789
비융자성사업비	29,655	31,403	1,748
예 치 금	5,478	9,519	4,041
예 탁 금	-	-	-

○ 수입 변경 : 57억 8,900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증가 : 42억 8,900만원[(당초) 51억 4,400만원 → (변경) 94억 3,300백만원]
  ※ 양천 기금 계획대비 차액(주민지원사업비 7억 1,600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8억 4,500만원
  ※ 노원 기금 계획대비 차액(아파트 관리비 17억 4,800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8억 4,700만원
  ※ 강남 기금 계획대비 차액(주민복지증진사업비 15억 8,800만원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5억 9,600만원
  ※ 마포 기금 계획대비 차액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 100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 증가 : 15억원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1.39%, '21. 3. 기준)가 공공예금 금리(1.71%, '21. 3. 기준)보다 낮음에 따라 회수

○ 지출 변경 : 5,789백만원 증가

- 비융자성사업비 증가 : 1,748백만원
  ※ 2020년도 노원주민지원기금 중 아파트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에 반영

- 예치금 증가 : 4,041백만원
  ※ 2021년 수입 변경 및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변경으로 예치금 증가

Ⅲ.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57억 8,7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42억 8,900만원)와 **예탁금원금회수**(15억원)로 증액하고, 지출계획중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17억 4,8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40억 4,100만원)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기준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효율적인 폐기물처리**가 당초보다 5.9%, 17억 4,800만원 증가하여 의회의 의결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나, ②**일반예산(재무활동)**은 73.8%, 40억 4,100만원 증가하게 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초 (A)	기금운용계획변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D=C/A)
계	35,132	40,921	5,789	16.5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29,654	31,402	1,748	5.9
난방비지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463	6,463	-	-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2,356	2,356	-	-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1,158	1,158	-	-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2,948	2,948	-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782	782	-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87	187	-	-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292	292	-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78	178	-	-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23	123	-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2,264	14,012	1,748	14.3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7,300	9,048	1,748	23.9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4,963	4,963	-	-
주민복지증진사업비(관리비/임대비)지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145	10,145	-	-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10,000	10,000	-	-
노원주민 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145	145	-	-
일반예산(재무활동)	5,478	9,519	4,041	73.8
보전지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478	9,519	4,041	73.8
여유자금예치	5,478	9,519	4,041	73.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830('21. 6. 4)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중 ①**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후생복리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해당되며, ②**여유자금 예치**의 경우에도 기금의 조성액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법령과 기준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당초 동 기금의 정책사업은 ①**효율적인 폐기물처리**, ②**일반예산(재무활동)**으로 기재하여 제출되어야 하나,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예탁금”으로 임의로 구분되어 제출된 바,

- 부정확한 정책사업을 기재함으로써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